

춘천지방법원 2019. 10. 29 선고 2018가단50884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]

전 문

원고한국철도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금성, 담당변호사 박재범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2019. 10. 1.

판결 선고2019. 10. 2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A는 ① 춘천시 E 철도용지 444㎡ 중 별지 도면(1)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443㎡, ② F 철도용지 35㎡, ③ G 철도용지 25㎡ 중 같은 도면 표시 9, 10, 21, 22, 15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ㄹ' 부분 3㎡, ④ H 철도용지 339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0, 11, 12, 13, 20, 21,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ㅂ' 부분 42㎡, ⑤ I 철도용지 909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36, 24, 23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ㅇ' 부분 76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33, 34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ㅈ' 부분 85㎡, ⑥ J 임야 667㎡ 중 같은 도면 표시 9, 15, 43, 44, 45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ㅋ' 부분 11㎡, ⑦ K 임야 155㎡ 중 같은 도면 표시 7, 8, 9, 45, 46, 47, 48, 33,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ㅌ' 부분 124㎡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들은 각자 ① 춘천시 E 철도용지 444㎡ 및 F 철도용지 35㎡ 중 별지 도면(2)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31, 9, 10, 11, 12, 13, 14, 22, 15, 16, 17, 18, 19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77) 부분 건물 본체 175㎡, 같은 도면 표시 12, 11, 28, 27, 13,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창고 10㎡, ② E 철도용지 444㎡ 중 같은 도면 표시 31, 30, 29, 11, 10, 9,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4) 부분 창고 11㎡, ③ F 철도용지 35㎡ 중 같은 도면 표시 23, 26, 25, 24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라) 부분 보일러실 2㎡, ④ E 철도용지 444㎡, F 철도용지 35㎡, I 철도용지 909㎡ 중 같은 도면 표시 19, 18, 17, 16, 15, 22, 21, 20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마) 부분 테라스 50㎡, ⑤ J 임야 667㎡ 지상 입간판을 철거하고,
다. 피고 A는,

- 1) 5,417,930원과 그중 4,695,930원에 대하여 2017. 9. 2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- 2) 9,951,812원과 2018. 2. 1.부터 춘천시 E 철도용지 444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65,5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A, B에 대한 청구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, 150조 3항)

피고 C, D에 대한 청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)

판사유재현

별지